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2023. 1. 1. 개정 판 (시행 2023. 1. 1.) → 2023. 3. 1. 개정 판 (시행 2023. 3. 1.)

바뀐 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72/compare?from=1408&to=1427>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4:18:20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u>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u>,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u>진죽리 129-5에</u>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공장 및 사무소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u>마참길38에</u> 둔다.(개정 2016.7.28., 2023.3.1.)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벌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부총장 직속기구로 <u>학술정보원,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u>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벌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u>미래전략사업본부</u>,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제94조(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18.1.18., 2020.11.18., 2022.2.17.)	제94조(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18.1.18., 2020.11.18., 2022.2.17.)

현행	개정안
③부속교육기관에는 <u>국제교육원</u>,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⑥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③부속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u>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u>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u>2023.3.1.</u>)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⑥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18.1.18., 2020.11.18., 2022.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u>기록물관리팀</u>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u>2018.1.18., 2020.11.18., 2022.2.17., 2023.3.1.</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공장 및 사무소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마참길38에 둔다.(개정 2016.7.28., 2023.3.1.)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벌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제 (2015.1.22.)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18.1.18., 2020.11.18., 2022.2.17.)

③부속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2023.3.1.)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기록물관리팀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18.1.18., 2020.11.18., 2022.2.17., 2023.3.1.)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